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2012 ~
----------	--------

제출연월일	2012. 03.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을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전 학교 급식인원에 대하여 물품구매, 배송 등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12번지

다. 규 모 : 연면적 1,345m² (지상2층)

- 1층(1,054m²) : 입하장, 냉장·냉동 창고, 소포장실, 출하장 등
- 2층(291m²) : 사무실, 회의실, 식당, 탈의실 등

라. 위탁대상 업무

- 시설 : 학교급식지원센터 1,2층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
- 운영 : 37개 전 학교 물품구입 및 배송 업무

마.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단, 매년(연도말기준)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여부 재결정

바. 위탁운영 방식

- 공급품목의 가격, 생산공급업체 선정, 대행수수료율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 물품구매, 배송 등 업무 일체 위탁
- 시설, 기계장비의 사용료 년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 사용료 징수 (사업초기 임을 감안 3년간 사용료 징수 유예)

사. 소요예산

- 내년 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비 예산은 필요치 않음
('2012년 1회 추경예산 식재료비 5,873백만원 전액 삭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나. 예산조치 : 2013년 위원회 운영수당 등 반영 계획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안)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을 위해 관내 전 학교 급식인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코자 함

I.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II. 시설개요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1347-12번지
- 건축규모 : 지상2층 (건축면적 : 1,119㎡ / 연면적 : 1,345㎡)
- 공간구성 : 입·출하장 246㎡, 저장시설 267㎡, 위생실 56㎡, 기타 776㎡

시설내역	면적(㎡)	내 용	비 고
입하장/출하장	246	급식 식재료의 입하와 출하되는 공간	
저장시설 3동	267	예냉창고, 저온창고, 냉동창고 각 1동	
위 생 실	56	소분소포장 인원 및 내방 출입 인원에 대한 소독, 청결 구간	
기타 부대시설	776	사무실, 주방 및 운영기계장비 등	
계	1,345		

Ⅲ. 위탁추진 계획

□ 위탁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단, 매년(연도말기준)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여부 재결정
- 수탁자기관선정위원회 : 9인 이내
 - 위원장(부군수), 공무원2, 군의원1, 교육청1, 민간전문가4

□ 위탁범위

- 시 설 : 학교급식지원센터 1,2층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
- 운 영 : 관내 37개 전 학교 물품구매 및 배송 업무

□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창군내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거창군 전 학교 급식인원에 대하여 물품구매, 배송 등 사업수행능력을 갖춘자
- 평가기준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기술평가 : 법인의 재무상태, 물류인프라, 대내 공신력, 사업경험, 사업의 이해도 등
 - 가격평가 : 대행수수료를 산정을 통한 평가 점수 부여

□ 진행일정

- 모집공고 : '12. 1. 31 ~ 3. 30 (60일간)
- 접수기간 : '12. 4. 2 ~ 4. 6 (5일간)
- 선정위원회개최 : '12. 4월중
- 우선순위자와 협약 : '12. 4월중
- 추가협상 및 협약체결 : '12. 4월중
- 사업착수 : '12. 5. 1 ~

IV. 향후 추진(계획)

시 기	학 교	급식인원
'12. 1학기	23개교 (유1,초17,중5)	4,000명
'12. 2학기	37개교 (유1,초17,중11,고7)	10,000명

VI. 기대효과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군민 전체에 대한 급식 신뢰도 제고
-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처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마을별 특성화 작물재배, 마을 계약 재배 등을 통하여 저소득·소규모 농민에게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것으로 기대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86호, 2010. 7. 23,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6,6543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이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

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시행일 : 2011.10.04)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배농가·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2. 유통 및 공급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주 및 발주 관리

3. 거창교육지원청 및 관련 유관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4. 위원회, 거창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학교 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우수 식재료 생산 또는 학교급식 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⑥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 1997. 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 01.14 조례 제1878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